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과 조세회피*

홍영은**·박종국***·김수진****

|| 목 차 ||

I. 서론	169	IV. 실증분석결과	186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72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1. 조세회피		2. 가설검증결과	
2.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V. 결론	196
III. 연구의 설계	176		
1. 가설의 설정			
2. 표본선정			
3. 변수의 정의와 연구모형			

* 이 연구는 2023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주저자 :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 교신저자 :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 공동저자 : 영남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교수

***** 투고일 : 2024. 12. 30. 1차수정일 : 2025. 1. 18. 게재확정일 : 2025. 2. 6.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성을 기업의 조세 전략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과 조세회피 간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연구 목적으로 하며, 조세회피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를 주요 관심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측정치로는 유효세율(GETR), 현금유효세율(CETR), 장기유효세율(LGETR), 장기현금유효세율(LCETR)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관심변수인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보고된 기업-연도별 사업보고서의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 실시내용’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항목에 보고된 ‘커뮤니케이션 횟수’ 정보를 수집한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조세회피 간 양(+)의 관련성은 단기 및 장기 조세회피 측정치로 종속변수를 각각 달리한 모든 분석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기존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첫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로 나타난 결과, 둘째, 내·외부감사인 간 지식 전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 나타난 결과 셋째, 경영자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 조세 전략 즉, 조세 최소화 전략을 취할 유인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제도의 개정 또는 신제도 도입 시 관련 규제 당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 규제 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규제 당국의 권장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현 제도의 취약점과 함께 제시하였다는 데 공헌점과 시사점이 있으며, 향후 규제 당국의 제도 개선 및 도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주제어:**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조세회피, 조세전략

I. 서 론

정부는 기업들의 세전 수익 1/3 이상을 조세로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환경은 주주들로 하여금 경영자에게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조세 전략을 요구하게 만든다.

조세회피는 효익과 비용을 모두 수반하게 된다. 조세회피의 가장 명백한 편익은 조세 절감이다. 조세 절감이라는 효익이 존재함과 동시에 세무조사 등과 같은 비용도 수반하게 된다(Chen et al. 2010).¹⁾ 한편 주주 입장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비용이 조세회피 활동에서 나타나는 대리인문제이다(Kerr 2012 ; Hanlon 2005 ; Ayers et al. 2009 ; Comprix et al. 2011 ; Balakrishnan et al. 2012 ; Desai and Dharmapala 2006 등).²⁾ 즉, 조세회피로

-
- 1) Chen, S., Chen, X., Cheng, Q. and Shevlin, T., Are family firms more tax aggressive than non-family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5(1), ELSEVIER, 2010, pp.41~61.
 - 2) Kerr, J. N., The real effects of opacity : Evidence from tax avoidance, Columbia Business School Research Paper NO.13-16, 2012, pp.1~61 ; Hanlon, M.,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 tax differences, *The accounting review* 80(1),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5, pp.137~166 ; Ayers, B. C., Jiang, J. and Laplante, S. K., Taxable income as a performance measure : The effects of tax planning and earnings qualit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6(1), WILEY, 2009, pp.15~54 ; Comprix, J., Graham, R. C. and Moore, J. A., Empirical evidence on the impact of book-tax differences on divergence of opinion among investor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3(1),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1, pp.51~78 ; Balakrishnan, K., Blouin, J. and Guay, W., Does tax aggressiveness reduce corporate transparency?, Available at SSRN 1792783, 2012, pp.1~66 ; Desai, M. A. and Dharmapala, D.,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ELSEVIER, 2006, pp.145~179.

인한 경영자의 지대약탈이다. 지대약탈은 경영자의 공격적인 재무보고, 과시적소비, 사적 거래를 통해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가치극대화를 말한다. 조세회피 측면에서도 경영자가 조세회피를 기회주의적인 사적이익추구로 활용한다면 조세회피의 결과물이 주주에게서 경영자로 이전되는 지대약탈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Chen et al. 2010 ; Chan et al. 2016).³⁾

이는 대리인문제로 인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가 유발하는 비용이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연구자들은 대리인문제 내에서 조세회피가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choles et al. 2014 ; Desai and Dharmapala 2006).⁴⁾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대 전제하에 대리인문제는 현대 경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조세 전략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대리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답을 주로 지배구조에서 찾아왔다(Minnick and Noga 2010 ; Rego and Wilson 2012 ; Robinson et al. 2012 ; Armstrong et al. 2015 ; Gallemore and Labro 2015 ; Chen et al. 2019 ; Shackelford and Shevlin 2001).⁵⁾

3) Chen, S., Chen, X., Cheng, Q. and Shevlin, T., *op. cit.*, 2010, pp.41~61 ; Chan, K. H., Mo, P. L. L. and Tang, T., Tax avoidance and tunneling : Empirical analysis from an agency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Research* 15(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6, pp.49~66.

4) Scholes, M. S., Wolfson, M. A., Erickson, M., Maydew, E. and Shevlin, T., *Taxes and business strategy*, Upper Saddle River, NJ : Prentice Hall, 2014. ; Desai, M. A. and Dharmapala, D., *op. cit.*, 2006, pp.145~179.

5) Minnick, K. and Noga, T., Do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stics influence tax management?,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6(5), ELSEVIER, 2010, pp.703~718 ; Rego, S. O. and Wilson, R., Equity risk incentives and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0(3), WILEY, 2012, pp.775~810 ; Armstrong, C. S., Blouin, J. L., Jagolinzer, A. D. and Larcker, D. F., Corporate governance, incentives, and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0(1), ELSEVIER, 2015, pp.1~17 ; Gallemore, J. and Labro, E.,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information environment for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0(1), ELSEVIER, 2015, pp.149~167 ; Chen, S., Huang, Y., Li, N. and Shevlin, T., How does quasi-indexer ownership affect corporate tax planning?, *Journal of Accounting*

최근 규제당국은 경영자를 감시하는 지배구조의 주요한 축인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의 소통을 장려하고 소통 내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감사는 회사의 지배구조를 이루는 주요한 축으로써 경영자와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 회계 및 업무 감시권 등을 가진 독립적인 내부 견제기관인 감사의 전문성 제고는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근간이 된다. 이러한 역학구조 하에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최근 더욱 증대되고 있다. 기업의 내부감사인 입장에서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걸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이나 최근의 회계·세무에 관한 주요 이슈, 경쟁사의 특성과 자사의 위치 등 내부감사인이 획득하기 힘든 정보들을 내·외부감사인 간 소통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도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자로부터의 병풍 역할(entrenchment effect)을 내부감사인에게 유도할 수 있어 내·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감사 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와 2017년 1월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의무화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과 공시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과 공시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외부감사인의 병풍 역할을 하고 있다면 조세회피의 기회주의적인 측면이 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조세회피 측정치를 사용하여 이들과 공시된 내·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d Economics 67(2-3), ELSEVIER, 2019, pp.278~296 ; Shackelford, D. A. and Shevlin, T., Empirical tax research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1-3), ELSEVIER, 2001, pp.321~387.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전 세계 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모두에게 해결되지 않는 관심의 대상이다. 본 연구는 정부 정책에 대한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를 분석하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조세회피 요인에 대한 지속되는 연구에 또 다른 논거를 제시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주제인 조세회피와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에 관련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개관한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연구설계를 제시하고 IV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그리고 마지막 V장에서 결론을 제시하여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조세회피

조세는 기업 입장에서 이윤 창출 활동에 필요한 원가가 아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외부로 유출되는 비용이자 경제적 부담이다(Hanlon and Heitzman 2010).⁶⁾ 또한, 이러한 외부로의 현금 유출은 경영자, 주주,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지대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적 부담의 감소와 이해관계자들의 효익 극대화를 위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다(Phillips 2003 ; Wilson 2009).⁷⁾ 이러한 이유로

6) Hanlon, M. and Heitzman, S.,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2-3), ELSEVIER, 2010, pp.127~178.

7) Phillips, J. D., Corporate tax planning effectiveness : The role of compensation based incentives, *The Accounting Review* 78(3),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003, pp.847~874 ; Wilson, R. J., An examination of corporate tax shelter participants, *The Accounting Review* 84(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9, pp.969~999.

조세회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선행연구에서는 조세회피가 기업 외부로의 현금 유출을 감소시키고, 세후 순이익 및 현금흐름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확보된 유휴 현금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하게 배분되고 적절한 투자에 활용될 경우 주주의 부 및 기업가치를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윤성 등 2007 ; 김진수와 고종권 2016 ; 박종일 등 2017 ; 심충진 2011).⁸⁾

그러나 조세회피를 대리인문제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Crocker and Slemrod 2005).⁹⁾ 관련 선행연구는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 편익 추구 수단으로 조세회피를 활용할 수 있고(Jensen 1986 ; Dhaliwal et al. 2011),¹⁰⁾ 이때 증가하는 거래의 복잡성(complexity)과 난독성(obfuscation)은 경영자의 또 다른 기회주의적 행동과 자원의 전용(轉用)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Desai and Dharmapala 2006 ; Chen et al. 2010 ; Kim et al. 2011 ; Payne and Raiborn 2018).¹¹⁾ 또한, 조세회피로 확보된 가용자금이 경영자의 비

8) 고윤성 외 2인,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07, 9~40면 ; 김진수 · 고종권,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세무사회, 2016, 267~298면 ; 박종일 외 2인, “세무보고 공격성이 발생액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발생액의 질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6권 제3호, 한국경영학회, 2017, 715~753면 ; 심충진, “조세회피와 재투자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1, 185~208면.

9) Crocker, K. J. and Slemrod, J., Corporate tax evasion with agency co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9-10), ELSEVIER, 2005, pp.1593~1610.

10) Jensen, M. C., Agency costs of free cash flow, corporate finance and takeovers, *American Economic Review* 76(2),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986, pp.1~15 ; Dhaliwal, D. S., Huang, S. X., Moser, W. J. and Pereira, R., Corporate tax avoidance and the level and valuation of firm cash holdings, In 2011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nnual Meeting-Tax Concurrent Sessions, Available at SSRN 1905076, 2011, pp.1~44.

11) Desai, M. A. and Dharmapala, D., *op. cit.*, 2006, pp.145~179 ; Chen, S., Chen, X., Cheng, Q. and Shevlin, T., *op. cit.*, 2010, pp.41~61 ; Kim, J. B., Li, Y. and Zhang, L., Corporate tax avoidance and stock price crash risk : Firm-level analysis, *Journal*

효율적인 투자 행태로 이어질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정성환 2012).¹²⁾

이처럼 조세회피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과 대리인 비용을 유발하는 억제되어야 할 행위로 바라보는 부정적 관점으로 서로 상반된 양면적 특성을 보고하고 있다.

2.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감사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원활한 상호작용이 중요시되었다. 이에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이중현 외 2024).¹³⁾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에서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모범사례는 외부감사 실시단계별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외부감사 실시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수행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외부감사인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초청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원은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견교류 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최소 분기에 한 번씩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합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모범사례가 발표된 이후 내·외부

of financial Economics 100(3), ELSEVIER, 2011, pp.639~662 ; Payne, D. M. and Raiborn, C. A., Aggressive tax avoidance : A conundrum for stakeholders, governments, and mora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47, SPRINGER, 2018, pp.469~487.

12) 정성환, “조세회피가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2, 9~44면.

13) 이중현 외 2인,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6권 제1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 1~32면.

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평균 2015년 2.29회, 2016년 2.52회, 2017년 2.6회로 미비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삼정KPMG 2019a).¹⁴⁾ 특히 2017년 기준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74.6%가 2017년 4분기와 2018년 1분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커뮤니케이션이 기말감사와 관련한 의례적 커뮤니케이션임을 의미한다.

이에 2017년 금융감독원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주된 내용 중 하나인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s)을 선정하여 이를 주요 감사대상으로 하고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핵심감사사항(KAM)은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사항 중 선택하게 되어 있어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현실화되었다. 실제로 핵심감사제 도입이 의무화된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17년 평균 3.14회에서 2018년 3.98회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금융감독원이 권장하는 평균 4회에 근접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가하였다(삼정KPMG 2019b).¹⁵⁾

이후 기업지배구조 평가 항목 핵심 지표 15가지에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회의 개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내·외부감사 주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었으며(김유진과 홍지연 2022),¹⁶⁾ 2018년 내·외부감사인 간 경영진 없이 최소 분기별 회의를 시행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것을 규정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 마련되었다.

14) 삼정 KPMG ACI, “국내 상장법인 지배구조 —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현황”, 『감사위원회 저널』 제9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2019a, 37~41면.

15) 삼정 KPMG ACI, “핵심감사제 단계적 도입 첫 해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회 저널』 제10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2019b, 47~53면.

16) 김유진·홍지연, “외부감사인과 내부 감사기구 간의 의사소통이 신용등급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102권, 한국국제회계학회, 2022, 1~21면.

특히, 2018년 회계 정보의 신뢰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新외감법 도입으로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개최 일자, 참석자 구성 현황, 방식 및 논의 내용을 포함한 공시가 규정되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0. 1. 29.).

이처럼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가 확대 및 강화됨에 따라 관련 선행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는 주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외 재무보고 품질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김종근과 김갑순 2020 ; 박종일과 이윤정 2021 ; 이중현 등 2024).¹⁷⁾

Ⅲ. 연구의 설계

1. 가설의 설정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조세회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결정요인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기업 규모, 수익성, 자본구조, 투자, 무형자산, 해외사업, 성장기회, 기업공시 등 광범위한 기업 특성들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Dyrenge et al. 2008 ; Chen et al. 2010 ; Frank et al. 2009 ; Gallemore and Labro 2015 ; Lisowsky 2009 ; Wilson 2009).¹⁸⁾

17) 김종근·김갑순,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과의 관련성”, 『세무와 회계저널』 제21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20, 29~48면 ; 박종일·이윤정, “경영자 과신성향 및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ESG 평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9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22, 9~59면 ; 이중현 외 2인, 앞의 논문, 2024, 1~32면.

최근의 실증적 증거는 주로 정보비대칭에 의한 대리인이론에 기초하여 조세회피를 설명하고 있다(Kerr 2012 ; Hanlon 2005 ; Ayers et al. 2009 ; Comprix et al. 2011 등).¹⁹⁾ Desai and Dharmapala(2006)²⁰⁾는 지대약탈과 조세회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들은 역외 조세피난처의 추구 등과 같은 조세회피 활동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디자인되거나 IRS(Internal Revenue Service)로부터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매우 복잡한 거래들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복잡한 거래들로 구조화된 조세회피의 결과물은 주주가 아니라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주주의 부가 경영자에게로 전이되는 경영자에 의한 지대약탈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지대약탈의 문제를 Desai et al.(2007)²¹⁾은 기업지배구조를 대입하여 모형화하였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에서는 경영자가 주주에게 귀속되어야 할 효익을 사적으로 취득하는데, 조세회피를 사용할 유인이 훨씬 높음을 발견하였다. 즉, 이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지대추구행위로 인한 조세회피는 우수한 지배구조를 통해 통제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18) Dyreng, S. D., Hanlon, M. and Maydew, E. L., Long ru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3(1),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8, pp.61~82 ; Chen, S., Chen, X., Cheng, Q. and Shevlin, T., *op. cit.*, 2010, pp.41~61 ; Frank, M. M., Lynch, L. J. and Rego, S. O.,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and its relation to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4(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9, pp.467~496 ; Gallemore, J. and Labro, E., *op. cit.*, 2015, pp.149~167 ; Lisowsky, P., Inferring US tax liability from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1(1),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009, pp.29~63 ; Wilson, R. J., *op. cit.*, 2009, pp.969~999.

19) Kerr, J. N., *op. cit.*, 2012, pp.1~61 ; Ayers, B. C., Jiang, J. and Laplante, S. K., *op. cit.*, 2009, pp.15~54 ; Comprix, J., Graham, R. C. and Moore, J. A., *op. cit.*, 2011, pp.51~78.

20) Desai, M. A. and Dharmapala, D., *op. cit.*, 2006, pp.145~179.

21) Desai, M. A., Dyck, A. and Zingales, L., Theft and tax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4(3), ELSEVIER, 2007, pp.591~623.

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은 경영자의 지대약탈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요한 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Gallemore and Labro(2015)²²⁾는 조세회피가 내부통제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Robinson et al.(2012)²³⁾은 조세회피의 일반적인 형태와 “위험한” 형태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배구조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사회 내에서 회계 전문가의 비율과 역량이 높고 견제 장치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경영자는 일반적으로 덜 “위험한” 조세 전략을 추구한다고 보고하였다.

지배구조로써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의 주요한 축은 감사이다. 감사는 회계 및 업무감시권 등을 가진 독립적인 내부 견제 기관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근간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통해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내·외부 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빈도 및 내용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내부감사인의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례에 의하면 내부감사인은 주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내부 감사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부감사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최근의 회계·세무에 관한 주요 이슈 등 내부감사인이 획득하기 힘든 정보에 대한 학습이 가능해진다. 외부감사인 입장에서조차 내부감사인과의 소통은 내부감사인의 병풍 역할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내·외부감사인 간의 소통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을

22) Gallemore, J. and Labro, E., *op. cit.*, 2015, pp.149~167.

23) Robinson, J. R., Xue, Y. and Zhang, M. H., Tax planning and financial expertise in the audit committee, Available at SSRN 2146003, 2012, pp.1~40.

제고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조세회피 활동 역시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조세회피는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

2. 표본선정

본 연구는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1) 12월 말 결산 기업
- (2) 금융 및 보험·증권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 (3)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 (4)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인 기업
- (5) 에프엔가이드가 제공하는 Data-Guide 및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구할 수 있는 기업

12월 말 결산 기업으로 한정된 조건 (1)은 결산 시점의 차이로 인한 비교 가능성 감소로 연구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조건 (2)의 영업특성과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성격 등이 일반 제조업과 상이한 금융 및 보험·증권업은 표본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제외한 것이다. 조건 (3)은 분석에 사용하는 재무자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조건 (4)는 재무자료를 Data-Guide에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수집하였기 때문이다. 아래 <표 1>은 이상의 표본선정 요건에 따라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사용된 표본의 선정과정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표본 선정 과정

표본 선정 기준	표본 수 (기업-연도)
최초표본	7,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결산이 아닌 표본 제외 • 금융업 및 보험·증권업에 속하는 표본 제외 • 자본잠식 표본 제외 •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표본 제외 •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표본 제외 	(755)
종속변수 GETR, CETR 사용 1차 최종표본	6,525
LGETR, LCETR 변수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표본 제외	(1,257)
종속변수 LGETR, LCETR 사용 2차 최종표본	5,268

3. 변수의 정의와 연구모형

가. 종속변수의 정의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 조세회피 변수를 사용한다. 조세회피 측정치는 자료 수집 및 방법론상의 문제로 인하여 측정치별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여러 측정치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수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각 측정치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변수의 측정치로 다음의 4가지를 사용한다.

첫 번째 조세회피 측정치는 유효세율(GETR)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GETR_{i,t} = \frac{\text{법인세비용}_{i,t}}{\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_{i,t}} \dots\dots\dots \textcircled{1}$$

유효세율(GETR)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공시되는 재무제표 자료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남철 등 2018).^{24), 25)}

유효세율(GETR)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두 번째 조세회피 측정치로 법인세부담액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 현금유효세율(CETR)을 사용하였다. 이때 법인세부담액은 선행연구를 따라 ‘법인세비용 + (당기 이연법인세 자산 - 전기 이연법인세 자산) - (당기 이연법인세 부채 - 전기 이연법인세 부채)’로 계산하였다(홍준용 등 2020 ; 박종일과 이윤정 2022).²⁶⁾

$$CETR_{i,t} = \frac{\text{법인세부담액}_{i,t}}{\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_{i,t}} \dots\dots\dots \textcircled{2}$$

이상의 두 조세회피 측정치 유효세율(GETR)과 현금유효세율(CETR)은 연간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장기간의 조세회피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세 번째, 네 번째 조세회피 측정치로 장기유효세율(LGETR)과 장기현금유효세율(LCETR)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4) Dyreng et al.(2008)은 유효세율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는 법인세비용을 당기법인세비용만을 분자로 사용함으로써 인해 강건한 대응치로는 부족하다. 둘째, 분자와 동일하게 분모 역시 이월결손금 등으로 인한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Dyreng et al.(2008)은 현금납부법인세액을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현금유효세율을 측정하였다.

25) 정남철 외 2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조세전략”, 『세무학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8, 141 ~ 178면.

26) 홍준용 외 2인,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21권 제5호, 한국세무학회, 2020, 193 ~ 220면 ; 박종일 · 이윤정,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의 지배구조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 직급별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3권 제4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21, 225 ~ 272면.

$$LGETR_{i,t} = \frac{\sum_{t=1}^n \text{법인세비용}_{it}}{\sum_{t=1}^n \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_{it}} \dots\dots\dots ③$$

$$LCETR_{i,t} = \frac{\sum_{t=1}^n \text{법인세부담액}_{it}}{\sum_{t=1}^n \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_{it}} \dots\dots\dots ④$$

Dyrenge et al.(2008)²⁷⁾을 따라 t-2기에서 t기까지 3년 동안의 법인세비용의 합계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합계로 나누어 장기유효세율(LGETR)을 측정하였고, t-2기에서 t기까지 3년 동안의 법인세부담액의 합계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합계로 나누어 장기현금유효세율(LCETR)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효세율 측정치들의 경우 해당 값이 클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낮고, 해당 값이 작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각 조세회피 측정치에 (-1)의 값을 곱한 역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따라 각 조세회피 측정치의 값이 0에서 1 사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Dyrenge et al. 2008 ; 박중국 등 2021).²⁸⁾

나. 관심변수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심변수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 변수를 사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보고된 기업-연도별 사업보고서의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 실시내용’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항목에 보고된 ‘커뮤니케이션 횟수’ 정보를 수집한 값으로 정의하였다.

27) Dyrenge, S. D., Hanlon, M. and Maydew, E. L., *op. cit.*, 2008, pp.61~82.
 28) Dyrenge, S. D., Hanlon, M. and Maydew, E. L., *Ibid.*, 2008, pp.61~82 ; 박중국 외 2인, “지속적인 조세회피는 주가 동조화 현상을 심화시키는가?”, 『세무와 회계 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1, 265~310면.

다. 연구모형

$$TAXAVOID_{i,t} = \beta_0 + \beta_1 COM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OCF_{i,t} + \beta_5 MPRESS_{i,t} + \beta_6 INV_{i,t} + Industry + Year + \varepsilon \dots\dots (1)$$

여기서,

TAXAVOID : 조세회피 측정치

COM :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

SIZE :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 :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OCF :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현금흐름/총자산)

MPRESS : 자본시장압력(최대주주지분율)

INV : 투자비용

[(유형자산증감액 + 감가상각비 + 당기총연구개발비)/총자산]

Industry : 산업더미

Year : 연도더미

본 연구는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기업의 조세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앞서 설명한 네 가지의 조세회피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위의 식(1)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경영자 행동의 기회주의적인 측면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변수 ‘COM’과 조세회피 측정치 간 관련성을 의미하는 β_1 이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다면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밖에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의 변수를 추가하였다. 첫째, 기업규모(SIZE) 변수는 정치적비용 가설에 근거하여 규모가 큰 기업은 더 많은 규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Zimmerman(1983)²⁹⁾

29) Zimmerman, J. L.,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의 연구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큰 규모의 기업에서는 조세회피에 이용할 수 있는 절세수단이 다양할 것이므로 더욱 적극적인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박성원 등(2014)³⁰⁾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규모가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못한 여타 특성을 포괄하는 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둘째, 부채가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한 Graham and Tucker(2006)³¹⁾의 연구와 이와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박성원 등(2014)³²⁾의 연구를 바탕으로 부채비율(LEV)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금으로 납부되는 세금은 기업의 유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Edwards et al.(2016)³³⁾에 따르면 유동성이 낮은 기업에서 더 많은 조세회피 유인을 가지므로 현금흐름과 조세회피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존재한다. 반면에 국내 연구에서는 이들 간 양(+)의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박종국과 홍영은 2009 ; 최혁과 황준성 2017)³⁴⁾. 이들 연구에서는 영업현금흐름은 기업의 영업이익과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영업현금흐름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은 영업실적으로 조세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해석하였다. 즉, 유동성 정도에 따라 조세회피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업현금흐름(OCF)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ELSEVIER, 1983, pp.119~149.

30) 박성원 외 2인,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회계저널』 제23권 제4호, 한국회계학회, 2014, 339~382면.

31) Graham, J. R. and Tucker, A. L.,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3), ELSEVIER, 2006, pp.563~594.

32) 박성원 외 2인, 위의 논문, 2014, 339~382면.

33) Edwards, A., Schwab, C. and Shevlin, T., Financial constraints and cash tax savings, *The Accounting Review* 91(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6, pp.859~881.

34) 박종국 · 홍영은,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9, 105~135면 ; 최혁 · 황준성,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조세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7~28면.

넷째, Stein(1989)³⁵⁾과 Klassen(1997)³⁶⁾의 연구에 근거하여 자본시장의 압력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자본시장의 압력이 높은 기업은 단기적인 재무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무보고에 집중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조세회피에 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고윤성 등(2007)³⁷⁾이 경영자지배기업보다 소유자지배기업이 조세회피에 적극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우재와 최승욱(2015)³⁸⁾ 역시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소유주의 기업 장악력이 높아지고 이는 조세회피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압력의 대용치로 내부소유집중도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다섯째, 조세회피와 투자 간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이를 투자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회피 유인이 줄어든 결과로 해석한 박종국과 홍영은(2009)³⁹⁾의 연구를 근거로 투자(INV) 변수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연도별 고유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더미(IND) 변수와 연도더미(YD)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고,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변수를 포함한 기타 통제변수의 극단치 조정을 위해 상·하위 1% 수준에서 Winsorization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5) Stein, J. C., Efficient capital markets, inefficient firms : A model of myopic corporate behavior,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4(4),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655~669.

36) Klassen, K. J., The impact of inside ownership concentration on the trade-off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72(3), JSTOR, 1997, pp.455~474.

37) 고윤성 외 2인, 앞의 논문, 2007, 9~40면.

38) 이우재·최승욱, “수명주기에 따른 기업의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와 조세회피 성향”,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1권,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381~402면.

39) 박종국·홍영은, 앞의 논문, 2009, 7~28면.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가. 기술통계

<표 2>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고한 것이다. 종속 변수인 조세회피 변수의 경우 해석의 편의를 위해 본래의 값에 (-1)을 곱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고, 이에 기술통계량에서도 (-1)이 곱해진 값으로 표시되었다.

<표 2> 기술통계량

Variable	Mean	Std	Min	Median	Max
GETR	-0.2049	0.1912	-1.0000	-0.2040	0.0000
CETR	-0.2040	0.2332	-1.0000	-0.1682	0.0000
LGETR	-0.2108	0.2214	-1.0000	-0.1962	0.0000
LCETR	-0.2083	0.1903	-1.0000	-0.2095	0.0000
COM	3.0113	1.2773	1.0000	3.0000	7.0000
SIZE	20.1532	1.4519	17.4851	19.8897	24.3412
LEV	0.3883	0.2016	0.0178	0.3947	0.8420
OCF	0.0444	0.0671	-0.1626	0.0416	0.2363
MPRESS	0.4459	0.1600	0.0915	0.4537	0.8184
INV	0.0192	0.0567	-0.1955	0.0073	0.2552

- 1) 변수의 정의 : GETR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으로 계산된 유효세율, CETR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부담액으로 계산된 현금유효세율, LGETR은 3년 누적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3년 누적 법인세비용으로 계산된 장기유효세

을, LCETR은 3년 누적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대비 3년 누적 법인세부담액으로 계산된 장기현금유효세율, SIZE는 기업규모(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는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OCF는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현금흐름/총자산), MPRESS는 자본시장압력(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통주 지분율), INV는 투자비율[(유형자산증감액 + 감가상각비 + 당기총연구개발비)/총자산], IND는 산업 더미, YD는 연도 더미.

- 2) LGETR, LCETR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1차 최종표본(6,525 기업 - 연도)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한 결과이며, 2차 최종표본(5,268 기업 - 연도)을 활용한 기타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량도 상기 표 및 선행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0보다 작거나 1 이상인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최솟값은 -1, 최댓값은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세율(GETR), 현금유효세율(CETR), 장기유효세율(LGETR), 장기현금유효세율(LCETR)의 평균값(중위수)은 각각 $-0.2049(-0.2040)$, $-0.2040(-0.1682)$, $-0.2108(-0.1962)$, $-0.2083(-0.2095)$ 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조세회피 측정치는 대체로 평균과 중위수가 유사한 크기를 보이거나 모든 변수의 평균이 중위수보다 다소 큰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현금유효세율(CETR) 변수의 경우 평균과 중위수 값의 차이와 표준편차가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나타나 다소 우측 편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측정치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서갑수와 박미영 2017; 이명환과 최유진 2017 등).⁴⁰⁾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COM)는 평균(중위수)값이 3.0113(3.0000)으로 나타나 표본 기업들이 연간 평균 3회 이상의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기별 1회 이상 연간 4회 이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표본 기업의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규제당국이 원하는 수준만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40) 서갑수·박미영, “장단기 조세회피활동과 경영자보상”, 『국제회계연구』 제71권, 한국국제회계학회, 2017, 331~356면; 이명환·최유진, “장기적인 조세최소화전략이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46권 제1호, 한국경영학회, 2017, 75~107면.

통제변수 중 자본시장압력(MPRESS)의 경우 평균값과 중위수 값은 0.4459와 0.453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솟값과 최댓값은 0.0915와 0.8184로 비교적 큰 차이가 있어 표본 기업별로 지분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영업현금흐름(OCF), 투자비율(INV) 변수의 경우 표본선정 기간과 표본선정 조건이 유사한 선행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나. 상관관계분석

<표 3>은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 변수(COM)와 조세회피 측정치 현금유효세율(CETR), 장기현금유효세율(LCETR) 변수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 변수(COM)와 조세회피 측정치 유효세율(GETR), 장기유효세율(LGETR)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통제변수인 기업규모(SIZE), 영업현금흐름(OCF), 자본시장압력(MPRESS) 변수는 네 가지 조세회피 변수 모두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채비율(LEV) 변수는 유효세율(GETR), 장기유효세율(LGETR) 변수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현금유효세율(CETR) 및 장기현금유효세율(LCETR) 변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투자(INV) 변수는 현금유효세율(CETR), 장기현금유효세율(LCETR) 변수와는 음(-)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유효세율(GETR), 장기유효세율(LGETR) 변수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각각의 변수들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은 단변량 결과분석이므로, 이어서 각각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표 3> 상관관계분석

변수명	GETR	CETR	LGETR	LCETR	COM	SIZE	LEV	OCF	MPRESS	INV
GETR	1.0000									
CETR	0.5970 (<.0001)	1.0000								
LGETR	-0.0445 (0.0013)	-0.0030 (0.8273)	1.0000							
LCETR	-0.0183 (0.1843)	-0.0247 (0.0730)	0.5970 (<.0001)	1.0000						
COM	-0.0043 (0.7558)	0.0318 (0.0211)	-0.0043 (0.7558)	0.0318 (0.0211)	1.0000					
SIZE	-0.1246 (<.0001)	-0.0897 (<.0001)	-0.1246 (<.0001)	-0.0897 (<.0001)	0.4930 (<.0001)	1.0000				
LEV	-0.0254 (0.0648)	-0.0043 (0.7543)	-0.0254 (0.0648)	-0.0043 (0.7543)	0.0860 (<.0001)	0.1585 (<.0001)	1.0000			
OCF	-0.0947 (<.0001)	-0.0860 (<.0001)	-0.0947 (<.0001)	-0.0860 (<.0001)	0.0160 (0.2452)	0.1787 (<.0001)	-0.0609 (<.0001)	1.0000		
MPRESS	-0.0479 (0.0005)	-0.0596 (<.0001)	-0.0479 (0.0005)	-0.0596 (<.0001)	-0.0576 (<.0001)	-0.0224 (0.1035)	-0.0948 (<.0001)	0.0554 (<.0001)	1.0000	
INV	0.0144 (0.2953)	-0.0281 (0.0414)	0.0144 (0.2953)	-0.0281 (0.0414)	0.0212 (0.1247)	0.0737 (<.0001)	0.0735 (<.0001)	0.0906 (<.0001)	-0.0346 (0.0121)	1.0000

- 1)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동일
- 2) 괄호 안의 숫자는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1%, 5%, 10% 내에서 유의한 값은 볼드체로 표시하였음.

2. 가설검증결과

<표 4>는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기업의 조세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Panel A는 단기 조세회피 측정치인 유효세율(GETR)과 현금유효세율(CETR)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Panel B는 장기 조세회피 측정치인 장기유효세율(LGETR)과 장기현금유효세율(LCETR)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결과를 각

각 보여주고 있다.

Panel 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COM)와 조세회피(GETR, CETR) 간 관련성을 의미하는 β 의 계수값이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외부 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조세회피 간 음(-)의 관련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본 연구의 [가설 1]과 일관되지 않은 결과이다.

Panel B의 분석 결과 또한 Panel A의 결과와 동일하게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COM)와 조세회피(LGETR, LCETR) 간 관련성을 의미하는 β 의 계수값이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나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하고, 본 연구의 [가설 1]과 일관되지 않은 결과이다.

<표 4>의 Panel A와 Panel B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조세회피 간 양(+)의 관련성은 단기 및 장기 조세회피 측정치로 종속변수를 각각 달리한 모든 분석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등을 종합하여 유추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업 내부의 감사 주체인 감사(위원회)와 기업 외부의 감사 주체인 외부감사인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저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가설 검증 결과

Panel A. 유효세율, 현금유효세율 변수 사용 가설검증				
Variable	TAXAVOID			
	GETR		CETR	
	Coeff.	t-value	Coeff.	t-value
Intercept	0.2383	6.21 ***	0.2904	6.23 ***
COM	0.0065	2.97 ***	0.0105	3.93 ***
SIZE	-0.0192	-10.04 ***	-0.0206	-8.90 ***
LEV	-0.0103	-0.81	0.0120	0.77
OCF	-0.1352	-3.69 ***	-0.1711	-3.84 **
MPRESS	-0.0299	-1.94 *	-0.1031	-5.50 ***
INV	0.1228	2.86 ***	-0.0935	-1.79 *
IND	Included		Included	
YD	Included		Included	
F-value	6.88***		8.42***	
Adj R-Sq	0.0289		0.0362	
Sample N	6,525		6,525	

Panel B. 장기유효세율, 장기현금유효세율 변수 사용 가설검증				
Variable	TAXAVOID			
	LGETR		LCETR	
	Coeff.	t-value	Coeff.	t-value
Intercept	0.2730	6.38 ***	0.3010	6.05 ***
COM	0.0079	3.39 ***	0.0116	4.27 ***
SIZE	-0.0207	-9.55 ***	-0.0215	-8.55 ***
LEV	-0.0178	-1.26	0.0035	0.21
OCF	-0.1989	-4.91 ***	-0.1705	-3.63 **
MPRESS	-0.0572	-3.38 *	-0.0871	-4.42 ***
INV	0.1492	3.00 ***	-0.0063	-0.11 *

Variable	TAXAVOID			
	LGETR		LCETR	
	Coeff.	t-value	Coeff.	t-value
IND	Included		Included	
YD	Included		Included	
F-value	8.07***		8.61***	
Adj R-Sq	0.0400		0.0429	
Sample N	5,268		5,268	

1)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동일함.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양측검증).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세무 전략 수립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외부 기업지배구조로서의 기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발휘되기 어려우며,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피감기업의 조세회피는 증가하게 된다(Chung and Lee 2024 ; 정희선과 김도영 2024).⁴¹⁾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사항인 조세회피 측면에서 기대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경영자 통제·감독 강화 효과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무엇보다 확보가 중요하다.

지난 2017년 규제 당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단행하였다. 해당 개정은 연속 감사 계약 체결로 인한 피감기업의 감사의견구매 행위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해를 방지하려는 조치 중 하나로 피감기업이 6년 연속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도의

41) Chung, H. and Lee, E. Y., Does opinion shopping impair auditor independence? Evidence from tax avoidance, *Journal of Contemporary Accounting & Economics* 20(1), Article Number. 100398, ELSEVIER, 2024. ; 정희선 · 김도영, “신외감법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친 영향”, 『세무학연구』 제41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24, 9~38면.

추가 및 확대를 포함하였다(외감법 제11조). 한규식과 구자은(2022)⁴²⁾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인이 피감기업에 비감사(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서비스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2003년 말 공인회계사법상 일부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으며, 2016년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외부감사인의 세무 관련 비감사(컨설팅)서비스는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일부 허용되고 있다. 이 같은 다년간에 걸친 규제당국의 법률 개정과 외부감사 관련 분야에서의 다양한 제도 도입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시키고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규정 및 제도는 이러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노력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관련 규정 및 제도는 두 주체가 빈번히 만날 것을 권장하면서도 양자 간 논의 사항에 대한 후발적 보고나 논의 사항의 적절성 검토와 같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침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공식적인 외부감사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수행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를 통제할 만한 후발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취약점이 해당 제도의 본래 도입 효과를 상쇄시켜 실효성 있는 결과가 관찰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둘째,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식 전이 효과(knowledge spillover effect)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컨설팅)서비스는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외부감사인이 피감기업에 대해 습득한 지식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조세부담을 낮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42) 한규식·구자은, “경영자 연령이 기업지배구조 및 비감사서비스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103권, 한국국제회계학회, 2022, 29~57면.

(McGuire et al. 2013 ; 이영한 등 2010).⁴³⁾ 이는 피감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경영활동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이해 정도가 조세회피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는 기업 내부 정책 및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조세 전략 수립 및 구현 방법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는 양 주체 사이의 지식 전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셋째, 대리인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한 상황하에서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 결과일 수 있다.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금 비용이라는 조세의 특징과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 본연의 목적 측면에서 기업은 언제나 여러 형태의 세무 전략을 통해 조세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해 경영자 행동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 지대 추구 행위 수단으로 조세회피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동반되는 정보불균형의 심화는 또 다른 대리인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된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상황하에서는 조세회피에 대한 기업 내부의 평가가 대리인관점의 부정적 평가에서 전통적 관점의 긍정적 평가로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리인비용과 조세회피 간 관련성 측면에서 기업 내부 정보환경의 품질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Gallemore and Labro 2015 ; 홍옥화 등 2018),⁴⁴⁾ 지배구조가 우수한 경우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사이의 부정

43) McGuire, S. T., Neuman, S. S. and Omer, T. C., Sustainable Tax Strategies and Earnings Persistence, Available at SSRN 1950378, 2013, pp.1~53 ; 이영한 외 2인, “Big4 감사인 여부와 계속감사기간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정책 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0, 33~62면.

44) Gallemore, J. and Labro, E., *op. cit.*, 2015, pp.149~167 ; 홍옥화 외 2인, “내부정보 환경이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7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2018, 79~112면.

적인 관계가 완화되거나 긍정적인 관계로 변하기도 한다는 선행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실증적 근거가 된다(강정연과 고종권 2014).⁴⁵⁾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세 전략 측면에서의 대리인문제 해결에 기업 지배구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Minnick and Noga 2010 ; Rego and Wilson 2012 ; Robinson et al. 2012 ; Armstrong et al. 2015 ; Gallemore and Labro 2015 ; Chen et al. 2019 ; Shackelford and Shevlin 2001),⁴⁶⁾ 이때 내적 지배구조와 외적 지배구조 모두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며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Jensen and Meckling 1976).⁴⁷⁾

감사(위원회)는 기업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경영자 행위를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외부감사인은 기업 외부에서 경영자 활동의 결과물인 회계정보를 감사하고 신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경영자 활동을 감시·감독하는 기업 내·외부 지배구조 축이 된다. 그러므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은 기업 내·외부 지배구조의 결합이라 볼 수 있다. 만약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절히 수행되었다면 내·외부 지배구조로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할수록

45) 강정연·고종권,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9권 제1호, 한국회계학회, 2014, 147~183면.

46) Minnick, K. and Noga, T., *op. cit.*, 2010, pp.703~718 ; Rego, S. O. and Wilson, R., *op. cit.*, 2012, pp.775~810 ; Robinson, J. R., Xue, Y. and Zhang, M. H., *op. cit.*, 2012, pp.1~40 ; Armstrong, C. S., Blouin, J. L., Jagolinzer, A. D. and Larcker, D. F., *op. cit.*, 2015, pp.1~17 ; Gallemore, J. and Labro, E., *op. cit.*, 2015, pp.149~167 ; Chen, S., Huang, Y., Li, N. and Shevlin, T., *op. cit.*, 2019, pp.278~296 ; Shackelford, D. A. and Shevlin, T., *op. cit.*, 2001, pp.321~387.

47) Jensen, M. C. and Meckling, W. H.,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ELSEVIER, 1976, pp.305~360.

내·외부감사 주체의 기능이 강화되어 기업 지배구조 품질이 향상되고, 경영자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 조세 전략 즉, 조세최소화 전략을 취할 유인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V. 결 론

대리인비용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비롯된 정보비대칭에 의해 경영자 행동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불안전할 때 발생한다. 대리인비용은 자본비용의 증가, 기업가치의 하락과 같은 비효율을 초래하고 나아가 이러한 비효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또 다른 대리인비용을 유발한다. 이러한 대리인비용은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보상 제도 혹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구조의 강화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세 전략 측면에서의 대리인문제 해결에 기업 지배구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Minnick and Noga 2010 ; Rego and Wilson 2012 ; Robinson et al. 2012 ; Armstrong et al. 2015 ; Gallemore and Labro 2015 ; Chen et al. 2019 ; Shackelford and Shevlin 2001).⁴⁸⁾ 이때 내적 지배구조와 외적 지배구조 모두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며 대리인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Jensen and Meckling 1976).⁴⁹⁾

48) Minnick, K. and Noga, T., *op. cit.*, 2010, pp.703~718 ; Rego, S. O. and Wilson, R., *op. cit.*, 2012, pp.775~810 ; Robinson, J. R., Xue, Y. and Zhang, M. H., *op. cit.*, 2012, pp.1~40 ; Armstrong, C. S., Blouin, J. L., Jagolinzer, A. D. and Larcker, D. F., *op. cit.*, 2015, pp.1~17 ; Gallemore, J. and Labro, E., *op. cit.*, 2015, pp.149~167 ; Chen, S., Huang, Y., Li, N. and Shevlin, T., *op. cit.*, 2019, pp.278~296 ; Shackelford, D. A. and Shevlin, T., *op. cit.*, 2001, pp.321~387.

49) Jensen, M. C. and Meckling, W. H., *op. cit.*, 1976, pp.305~360.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 지배구조를 이루는 주요한 축으로써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자 행위를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계 및 업무 감사권 등을 가진 독립적인 내부 지배구조 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는 경영자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근간이 된다. 이러한 역할구조하에서 최근 규제당국은 기업 내부의 감사(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기능 활성화 및 기업지배구조 강화 목적으로 내·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내부감사인 입장에서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이나 최근의 회계·세무에 관한 주요 이슈, 경쟁사의 특성과 자사의 위치 등 내부감사인이 획득하기 힘든 경영 전반에 걸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도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자로부터의 병풍 역할(entrenchment effect)을 내부 감사(위원회)에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내·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시장 및 금융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본 연구는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성을 기업의 조세 전략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조세회피는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조세회피 측정치를 종속변수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를 주요 관심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많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조세회피 간 양(+)의 관련성은 단기 및 장기 조세회피 측정치로 종속변수를 각각 달리한 모든 분석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저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가 도출된 이유를 기존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첫째, 외부감

사인의 독립성 저하로 나타난 결과, 둘째, 내·외부감사인 간 지식 전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 나타난 결과, 셋째, 경영자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 조세 전략 즉, 조세최소화 전략을 취할 유인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공헌점을 가진다. 첫째, 회계 투명성 강화와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꾸준히 보완·강화되어온 외부감사 관련 정책이 기업의 조세 전략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의 개정 또는 신제도 도입 시 관련 규제 당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 규제 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포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규제 당국이 권장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현 제도의 취약점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향후 규제 당국의 제도 개선 및 도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현행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관련 정책 및 제도는 공식적인 외부감사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수행된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저해 문제를 통제할 만한 후발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 및 정책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내·외부감사인 간 논의 사항에 대한 후발적 보고나 논의 사항의 적절성 검토와 같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⁵⁰⁾

50) 물론 현행 관련 규제하에서 감사보고서상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관련 정보가 공시되고 있긴 하나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일자별 주요 논의 내용이 매번 같은 내용으로 반복 기재되어 있거나 ‘일자만 다를 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이 다년간 동일하게 기재되어있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핵심감사사항(KAM) 관련 논의 내용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기업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따라서 공시 주체 또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기재에서 벗어나려는 자의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규제 당국의 정책이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하였으므로 조세회피 결정요인을 찾으려는 지속되는 연구에 또 다른 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공헌점 및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석과 결과의 해석에 다음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세회피 측정치의 경우 세전이익 단위당 명시적 세금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해당 측정치로 대응된 조세회피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절세 혹은 조세회피 행위인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탈세 행위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둘째, 기업의 조세 전략을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단일 요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각 기업의 조세 전략은 해당 기업이 처한 환경적·제도적 요인을 고려하여 설계되므로 연구모형에 고려하지 못한 생략 변수의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과 조세회피 간 관련성을 인과관계 측면에서 해석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방향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인지, 내·외부감사 주체 간 지식전이 효과를 통한 긍정적 방향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도출된 결과인지 일방을 특정할 수 없다는 해석상의 한계가 있다.

이상의 한계점은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은 조세회피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는 선행연구들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동일한 문제일 수 있으며, 향후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과 조세회피 간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요인을 찾으려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내·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대리인비용관점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해석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가 마련되길 고대한다.

參 考 文 獻

1. 국내 문헌

- 강정연 · 고종권,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9권 제1호, 한국회계학회, 2014.
- 고윤성 · 김지홍 · 최원욱,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07.
- 김유진 · 홍지연, “외부감사인과 내부 감사기구 간의 의사소통이 신용등급 불일치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102권, 한국국제회계학회, 2022.
- 김종근 · 김갑순,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과의 관련성”, 『세무와 회계저널』 제21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20.
- 김진수 · 고종권,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세무사회, 2016.
- 박성원 · 고종권 · 김영철,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회계저널』 제23권 제4호, 한국회계학회, 2014.
- 박종국 · 홍영은,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9.
- 박종국 · 홍영은 · 김수진, “지속적인 조세회피는 주가 동조화 현상을 심화시키는가?”, 『세무와 회계 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1.
- 박종일 · 이윤정, “기업지배구조와 감사인의 지배구조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 직급별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3권 제4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21.
- _____, “경영자 과신성향 및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ESG 평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제39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22.
- 박종일 · 지승민 · 신재은, “세무보고 공격성이 발생액의 질에 미치는 영향 : 발생액의 질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6권 제3호, 한국경영학회, 2017.
- 삼정 KPMG ACI, “국내 상장법인 지배구조 —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현

- 황”, 『감사위원회 저널』 제9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2019a.
- _____, “핵심감사제 단계적 도입 첫 해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회 저널』 제10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2019b.
- 서갑수·박미영, “장단기 조세회피활동과 경영자보상”, 『국제회계연구』 제71권, 한국국제회계학회, 2017.
- 심충진, “조세회피와 재투자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11.
- 이명한·최유진, “장기적인 조세최소화전략이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46권 제1호, 한국경영학회, 2017.
- 이영한·김태동·김성환, “Big4 감사인 여부와 계속감사기간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0.
- 이우재·최승욱, “수명주기에 따른 기업의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와 조세회피 성향”,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1권, 한국산업경제학회, 2015.
- 이중현·김민희·전규안,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6권 제1호,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
- 정남철·윤성수·정석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조세전략”, 『세무학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18.
- 정성환, “조세회피가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2.
- 정희선·김도영, “신외감법이 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미친 영향”, 『세무학연구』 제41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24.
- 최 혁·황준성,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조세회피성향”, 『조세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 한규식·구자은, “경영자 연령이 기업지배구조 및 비감사서비스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103권, 한국국제회계학회, 2022.
- 홍옥화·고종권·박희진, “내부정보환경이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7권 제2호, 한국회계학회, 2018.
- 홍준용·김선미·유승원,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이익조정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21권 제5호, 한국세무학회, 2020.

2. 국외 문헌

- Armstrong, C. S., Blouin, J. L., Jagolinzer, A. D. and Larcker, D. F., Corporate governance, incentives, and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0(1), ELSEVIER, 2015.
- Ayers, B. C., Jiang, J. and Laplante, S. K., Taxable income as a performance measure : The effects of tax planning and earnings qualit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6(1), WILEY, 2009,
- Balakrishnan, K., Blouin, J. and Guay, W., Does tax aggressiveness reduce corporate transparency?, Available at SSRN 1792783, 2012.
- Chan, K. H., Mo, P. L. L. and Tang, T., Tax avoidance and tunneling : Empirical analysis from an agency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Research* 15(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6.
- Chen, S., Chen, X., Cheng, Q. and Shevlin, T., Are family firms more tax aggressive than non-family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5(1), ELSEVIER, 2010.
- Chen, S., Huang, Y., Li, N. and Shevlin, T., How does quasi-indexer ownership affect corporate tax plann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7(2-3), ELSEVIER, 2019.
- Chung, H. and Lee, E. Y., Does opinion shopping impair auditor independence? Evidence from tax avoidance, *Journal of Contemporary Accounting & Economics* 20(1), Article Number. 100398, ELSEVIER, 2024.
- Comrix, J., Graham, R. C. and Moore, J. A., Empirical evidence on the impact of book-tax differences on divergence of opinion among investor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3(1),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1.
- Crocker, K. J. and Slemrod, J., Corporate tax evasion with agency co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9-10), ELSEVIER, 2005.
- Desai, M. A. and Dharmapala, D.,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ELSEVIER, 2006.
- Desai, M. A., Dyck, A. and Zingales, L., Theft and tax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4(3), ELSEVIER, 2007.
- Dhaliwal, D. S., Huang, S. X., Moser, W. J. and Pereira, R., Corporate tax

- avoidance and the level and valuation of firm cash holdings, In 2011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nnual Meeting-Tax Concurrent Sessions, Available at SSRN 1905076, 2011.
- Dyreng, S. D., Hanlon, M. and Maydew, E. L., Long ru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3(1),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8.
- Edwards, A., Schwab, C. and Shevlin, T., Financial constraints and cash tax savings, *The Accounting Review* 91(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16.
- Frank, M. M., Lynch, L. J. and Rego, S. O., Tax reporting aggressiveness and its relation to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4(2),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9.
- Gallemore, J. and Labro, E., The importance of the internal information environment for tax avoidanc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60(1), ELSEVIER, 2015.
- Graham, J. R. and Tucker, A. L.,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3), ELSEVIER, 2006.
- Hanlon, M. and Heitzman, S., A review of tax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2-3), ELSEVIER, 2010.
- Hanlon, M.,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 tax differences, *The accounting review* 80(1),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5.
- Jensen, M. C., Agency costs of free cash flow, corporate finance and takeovers, *American Economic Review* 76(2),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986.
- Jensen, M. C. and Meckling, W. H.,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ELSEVIER, 1976.
- Kerr, J. N., The real effects of opacity : Evidence from tax avoidance, Columbia Business School Research Paper NO. 13-16, 2012.
- Kim, J. B., Li, Y. and Zhang, L., Corporate tax avoidance and stock price crash risk : Firm-level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0(3), ELSEVIER, 2011.
- Klassen, K. J., The impact of inside ownership concentration on the trade-off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72(3), JSTOR,

1997.

Lisowsky, P., Inferring US tax liability from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1(1),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009.

McGuire, S. T., Neuman, S. S. and Omer, T. C., Sustainable Tax Strategies and Earnings Persistence, Available at SSRN 1950378, 2013.

Minnick, K. and Noga, T., Do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stics influence tax management?,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6(5), ELSEVIER, 2010.

Payne, D. M. and Raiborn, C. A., Aggressive tax avoidance : A conundrum for stakeholders, governments, and morality, *Journal of Business Ethics* 147, SPRINGER, 2018.

Phillips, J. D., Corporate tax planning effectiveness : The role of compensation based incentives, *The Accounting Review* 78(3),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2003.

Rego, S. O. and Wilson, R., Equity risk incentives and corporate tax aggressivenes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0(3), WILEY, 2012.

Robinson, J. R., Xue, Y. and Zhang, M. H., Tax planning and financial expertise in the audit committee, Available at SSRN 2146003, 2012.

Scholes, M. S., Wolfson, M. A., Erickson, M., Maydew, E. and Shevlin, T., Taxes and business strategy, Upper Saddle River, NJ : Prentice Hall, 2014.

Shackelford, D. A. and Shevlin, T., Empirical tax research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1-3), ELSEVIER, 2001.

Stein, J. C., Efficient capital markets, inefficient firms : A model of myopic corporate behavior,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4(4),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Wilson, R. J., An examination of corporate tax shelter participants, *The Accounting Review* 84(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2009.

Zimmerman, J. L., Taxes and firm siz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ELSEVIER, 1983.

<Abstract>

The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on Tax Avoidance

Hong, Young-eun* & Park, Jong-kook** & Kim, Soo-ji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communicatio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on corporate tax strategies. The primary objectiv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frequency and tax-avoidance. To achieve this, a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and empirically analyzed, using tax-avoidance as the dependent variable and the number of communication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as the key independent variable.

Tax avoidance was measured through various metrics, including the GAAP effective tax rate (GETR), cash effective tax rate (CETR), long-run GAAP effective tax rate (LGETR), and long-run cash effective tax rate (LCETR). Data on the number of communications were extracted from the “communication with corporate governance” section of the external audit details in the annual business reports disclosed via the DART system.

The analysis revealed that an increase in communication frequency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level of corporate tax-avoidance, contrary to the initial hypothesis. This positive(+) relationship persisted across all analyses, regardless of whether short-term or long-term tax avoidance measures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findings were interpreted by considering existing literature and theoretical frameworks. First, the results were attributed to a potential decrease in the independence of external auditors. Second, they reflected a synergy effect stemming from knowledge transfer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Third,

* Primary Autho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Yeungnam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Yeungnam University

*** Co-Author : Research Professo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Yeungnam University

the findings suggested that improved managerial oversight incentivized companies to adopt profit-maximizing tax strategies, such as tax minimiz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highlights the need for regulatory authorities to broaden their scope when revising or introducing communication system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I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omprehensive discussions among regulatory bodies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Additionally, the study provides insights into areas requiring improvement in the current communication framework to better align with regulatory objective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and development of more effective systems in the future.

▶ **Key Words** : communicatio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audit committee, external auditors, tax avoidance,
tax strategy